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4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음
-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정비하고자 함
- 협의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안 제2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항 신설
- 위원의 임기 삭제(안 제4조)
- 회의운영 방식 변경(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 9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체계로 전환하고,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정무부지사 소관 업무 제외)’은 행정부지사 소관업무로 일원화했음
- 이어 같은 해 11월 27일 정무부지사의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경제 관련 사무분장 범위를 **경제·복지·과학·인구·청년·공항** 등의 업무로 확정하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려는 것임.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000개 정비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안내 하고 매월 지자체 대상 정비실적 점검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에서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활성화, 비상설화, 법령개정 건의, 통·폐합’ 등으로 정비를 추진중임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이 단 1건(’21. 11. / 서면개최)에 그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보관복지국 소관 업무가 정무부지사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최 실적이 미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이 개정안의 안 제2조제2항은 “행정부지사”를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려는 것임
- 위 개정은 앞서 언급한 사무분장 범위의 확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고 내용 또한 적절함
- 또한, ‘정무부지사’가 아닌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차후 부지사 명칭 변경 등의 사정 발생 시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해 11월 27일 사무분장 범위가 확정되었으나, 조례 개정 없이 약 5개월간 입법 미비 상태였던 부분에 관해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개정안의 제2조제4항으로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를 신설함
- 또한, 제4조(임기)의 삭제 및 제6조(회의운영)에서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협의사항이 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다”로 수정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음

- 다만, 협의회는 당연직인 위원장(정무부지사)과 부위원장(보건복지국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촉위원의 경우 위원장이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해 지난 2월로 기존 위촉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신규 위촉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협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력풀(pool)의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범위 확정으로 조례의 위원장을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정무부지사)로 개정하여 사무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차후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타당성이 있음
- 또한, 지난 5년 동안 1회의 서면회의만 개최되는 등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화 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협의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 따른 사항의 심의나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과 관련해 협의할 사항이 발생 시, 이를 담당할 협의회의 신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인력풀(pool)에 대한 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음”

9. 심 사 보 고 서 첨 부 서 류

○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행정부지사</u>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u><신설></u>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u>-----. ③ (현행과 같음) ④ <u>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 <u><삭제></u>
제4조(임기) ①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② <u>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u>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u>	제6조(회의운영) ----- ----- <u>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다.</u>

관련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2.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되어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과
- 행정업무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화 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한 찬 오